

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 16 조(계약 목적)

- 1) 마음자리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,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2)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
제 17 조(서비스 이용계약)

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.

제 18 조(계약 기간)

- 1) 마음자리복지센터의 수급자(혹은 법적대리인)은 안정적인 장기서비스를 위한 급여계약을 한다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3)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(계약변경)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4)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,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~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5)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
- 6)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- 7)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.

제 19 조(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)

- 1)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- 2)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신 수급자께서는 서비스를 받은 다음 달에 기관에서 발급하는